

# 2016년 버스정보시스템(BIS/BMS) 제 · 개정

2016. 02.

구분	현 행	개정(안)	비 고
머리말	<p>본 품셈은 “<u>ITS 업무요령(국토해양부 훈령 870호.2012.8.20) 제32조 ITS표준품셈의 제·개정</u>”에 의해 ITS 사업비 산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다.</p> <p>이에 본 품셈은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과 “<u>ITS 업무요령</u>”, “국가 ITS 아키텍처”에 정의된 대중교통 분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버스정보시스템(BIS/BMS) 관련 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일반적인 기준과 대중교통서비스의 자동화 및 지능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품을 정의함에 있다.</p>	<p>본 품셈은 “<u>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39호) 제21조 ITS사업비 산정 기준의 마련</u>”에 의해 ITS 사업비 산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다.</p> <p>이에 본 품셈은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과 “<u>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u>”, “국가 ITS 아키텍처”에 정의된 대중교통 분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버스정보시스템(BIS/BMS) 관련 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일반적인 기준과 대중교통서비스의 자동화 및 지능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품을 정의함에 있다.</p>	협회
제1장	<p>1. 목적</p> <p>본 품셈은 “<u>ITS 업무요령(국토해양부 훈령 870호.2012.8.20) 제32조 ITS표준품셈의 제·개정</u>”에 의해 ITS 사업비 산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다.</p> <p>이에 본 품셈은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과 “<u>ITS 업무요령</u>”, “국가 ITS 아키텍처”에 정의된 대중교통 분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버스정보시스템(또는 BIS/BMS) 관련 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일반적인 기준과 대중교통서비스의 자동화 및 지능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품을 정의함에 있다.</p>	<p>1. 목적</p> <p>본 품셈은 “<u>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39호) 제21조 ITS사업비 산정 기준의 마련</u>”에 의해 ITS 사업비 산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다.</p> <p>이에 본 품셈은 “<u>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u>”과 “<u>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u>”, “국가 ITS 아키텍처”에 정의된 대중교통 분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버스정보시스템(또는 BIS/BMS) 관련 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일반적인 기준과 대중교통서비스의 자동화 및 지능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품을 정의함에 있다.</p>	협회

구분	현 행	개정(안)	비 고																				
	<p>3.1. 적용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략</li> <li><u>&lt;신설&gt;</u></li> </ul>	<p>3.1. 적용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과 같음</li> <li><u>장비 기자재의 생산단종 또는 규격변경 등으로 조사되어 일부 품셈을 삭제하였으나, 어떠한 사유로 재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삭제될 당시 표준품셈의 해당항목을 적용하고, 시중노임은 최근 발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한다.</u></li> </ul>	정보통신																				
	<p>6. 업무 단계별 품셈 비교</p> <p>&lt;표 1-1&gt; 사업 단계별 업무 비교</p> <table border="1"> <thead> <tr> <th>업무 구분</th><th>업무 정의</th></tr> </thead> <tbody> <tr> <td>표준검증 및 성능평가</td><td>- ITS 업무요령에 규정된 사항에 준하여 구축되었는지를 기술적으로 시험·확인</td></tr> </tbody> </table>	업무 구분	업무 정의	표준검증 및 성능평가	- ITS 업무요령에 규정된 사항에 준하여 구축되었는지를 기술적으로 시험·확인	<p>6. 업무 단계별 품셈 비교</p> <p>&lt;표 1-1&gt; 사업 단계별 업무 비교</p> <table border="1"> <thead> <tr> <th>업무 구분</th><th>업무 정의</th></tr> </thead> <tbody> <tr> <td>표준검증 및 성능평가</td><td>- ITS 관련 법·규정에 정의된 사항에 준하여 구축되었는지를 기술적으로 시험·확인</td></tr> </tbody> </table>	업무 구분	업무 정의	표준검증 및 성능평가	- ITS 관련 법·규정에 정의된 사항에 준하여 구축되었는지를 기술적으로 시험·확인	협회												
업무 구분	업무 정의																						
표준검증 및 성능평가	- ITS 업무요령에 규정된 사항에 준하여 구축되었는지를 기술적으로 시험·확인																						
업무 구분	업무 정의																						
표준검증 및 성능평가	- ITS 관련 법·규정에 정의된 사항에 준하여 구축되었는지를 기술적으로 시험·확인																						
제2장	<p>2.2. 인건비</p> <p>&lt;표 2-1&gt; 별표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 ('15)</p> <table border="1"> <thead> <tr> <th>등급</th><th>월임금</th></tr> </thead> <tbody> <tr> <td>책임연구원</td><td>월 3,058,029원</td></tr> <tr> <td>연구원</td><td>월 2,344,854원</td></tr> <tr> <td>연구보조원</td><td>월 1,567,457원</td></tr> <tr> <td>보조원</td><td>월 1,175,633원</td></tr> </tbody> </table>	등급	월임금	책임연구원	월 3,058,029원	연구원	월 2,344,854원	연구보조원	월 1,567,457원	보조원	월 1,175,633원	<p>2.2. 인건비</p> <p>&lt;표 2-1&gt; 별표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 ('16)</p> <table border="1"> <thead> <tr> <th>등급</th><th>월임금</th></tr> </thead> <tbody> <tr> <td>책임연구원</td><td>월 3,079,435원</td></tr> <tr> <td>연구원</td><td>월 2,361,268원</td></tr> <tr> <td>연구보조원</td><td>월 1,578,429원</td></tr> <tr> <td>보조원</td><td>월 1,183,862원</td></tr> </tbody> </table>	등급	월임금	책임연구원	월 3,079,435원	연구원	월 2,361,268원	연구보조원	월 1,578,429원	보조원	월 1,183,862원	계약예규
등급	월임금																						
책임연구원	월 3,058,029원																						
연구원	월 2,344,854원																						
연구보조원	월 1,567,457원																						
보조원	월 1,175,633원																						
등급	월임금																						
책임연구원	월 3,079,435원																						
연구원	월 2,361,268원																						
연구보조원	월 1,578,429원																						
보조원	월 1,183,862원																						
	<p>2.4. 일반관리비</p> <p>일반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생략)</p>	<p>2.4. 일반관리비</p> <p>일반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 6%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현행과 같음)</p>	계약예규																				

구분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3장	<p><b>3.1.2. 기준 소요작업량 산정</b> (생략)</p> <p>&lt;표 3-2&gt; 기본계획 시 기술업무의 직능별 직업인력 소요 작업량(정류소 500개 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 colspan="6">직능별 소요작업량(인·일)</th></tr> <tr> <th>업무내용</th><th>기술사</th><th>특급</th><th>고급</th><th>중급</th><th>초급</th><th><u>보조원</u></th></tr> </thead> <tbody> <tr> <td>생략</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p>학술용역으로 소요 작업량을 산출 할 경우 기술사 및 특급기술자는 책임연구원, 고급기술자 및 중급기술자는 연구원, 초급기술자는 연구보조원 <b>&lt;신설&gt;</b>으로 직능을 분류한다. (생략)</p> <p>&lt;표 3-3&gt; 사업대상지역의 규모에 따른 기술등급별 투입인원</p> <p>(단위 : 명)</p> <table border="1"> <thead> <tr> <th>기 본 계 획</th><th>구분</th><th>생략</th></tr> </thead> <tbody> <tr> <td></td><td>기술사</td><td></td></tr> <tr> <td></td><td>특급</td><td></td></tr> <tr> <td></td><td>고급</td><td></td></tr> <tr> <td></td><td>중급</td><td></td></tr> <tr> <td></td><td>초급</td><td></td></tr> <tr> <td></td><td><u>보조원</u></td><td></td></tr> </tbody> </table>	구 분	직능별 소요작업량(인·일)						업무내용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u>보조원</u>	생략							기 본 계 획	구분	생략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u>보조원</u>		<p><b>3.1.2. 기준 소요작업량 산정</b> (현행과 같음)</p> <p>&lt;표 3-2&gt; 기본계획 시 기술업무의 직능별 직업인력 소요 작업량(정류소 500개 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 colspan="6">직능별 소요작업량(인·일)</th></tr> <tr> <th>업무내용</th><th>기술사</th><th>특급</th><th>고급</th><th>중급</th><th>초급</th><th><u>초급 숙련</u></th></tr> </thead> <tbody> <tr> <td>현행과 같음</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p>학술용역으로 소요 작업량을 산출 할 경우 기술사 및 특급기술자는 책임연구원, 고급기술자 및 중급기술자는 연구원, 초급기술자는 연구보조원, <b>초급숙련기술자는 보조원</b>으로 직능을 분류한다. (현행과 같음)</p> <p>&lt;표 3-3&gt; 사업대상지역의 규모에 따른 기술등급별 투입인원</p> <p>(단위 : 명)</p> <table border="1"> <thead> <tr> <th>기 본 계 획</th><th>구분</th><th>현행과 같음</th></tr> </thead> <tbody> <tr> <td></td><td>기술사</td><td></td></tr> <tr> <td></td><td>특급</td><td></td></tr> <tr> <td></td><td>고급</td><td></td></tr> <tr> <td></td><td>중급</td><td></td></tr> <tr> <td></td><td>초급</td><td></td></tr> <tr> <td></td><td><u>초급숙련</u></td><td></td></tr> </tbody> </table>	구 분	직능별 소요작업량(인·일)						업무내용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u>초급 숙련</u>	현행과 같음							기 본 계 획	구분	현행과 같음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u>초급숙련</u>		협회
구 분	직능별 소요작업량(인·일)																																																																																						
업무내용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u>보조원</u>																																																																																	
생략																																																																																							
기 본 계 획	구분	생략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u>보조원</u>																																																																																						
구 분	직능별 소요작업량(인·일)																																																																																						
업무내용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u>초급 숙련</u>																																																																																	
현행과 같음																																																																																							
기 본 계 획	구분	현행과 같음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u>초급숙련</u>																																																																																						

구분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4장	<p><b>3.1.2. 기준 소요작업량 산정</b> (생략)</p> <p>&lt;표 4-2&gt; 시스템 설계 시 기술업무의 직능별 직업인력 소요작업량(정류소 500개 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th colspan="6">직능별 소요작업량</th></tr> <tr> <th>업무내용</th><th>기술사</th><th>특급</th><th>고급</th><th>중급</th><th>초급</th><th><u>보조원</u></th></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p>학술용역으로 소요 작업량을 산출 할 경우 기술사 및 특급기술자는 책임연구원, 고급기술자 및 중급기술자는 연구원, 초급기술자는 연구보조원 <u>&lt;신설&gt;</u>으로 직능을 분류한다.</p> <p>(생략)</p> <p>&lt;표 4-3&gt; 사업대상지역의 규모에 따른 기술등급별 투입인원</p> <p style="text-align: center;">(단위 : 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th colspan="6"></th></tr> <tr> <td rowspan="6">기 본 설 계</td><td>기술사</td><td></td><td></td><td></td><td></td><td></td></tr> <tr><td>특급</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고급</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중급</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초급</td><td></td><td></td><td></td><td></td><td></td></tr> <tr><td><b>보조원</b></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p>(생략)</p>	구 분	직능별 소요작업량						업무내용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u>보조원</u>	생략							구분							기 본 설 계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b>보조원</b>							생략							<p><b>3.1.2. 기준 소요작업량 산정</b> (현행과 같음)</p> <p>&lt;표 4-2&gt; 시스템 설계 시 기술업무의 직능별 직업인력 소요작업량(정류소 500개 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th colspan="6">직능별 소요작업량</th></tr> <tr> <th>업무내용</th><th>기술사</th><th>특급</th><th>고급</th><th>중급</th><th>초급</th><th><u>초급 숙련</u></th></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p>학술용역으로 소요 작업량을 산출 할 경우 기술사 및 특급기술자는 책임연구원, 고급기술자 및 중급기술자는 연구원, 초급기술자는 연구보조원, <u>초급숙련기술자는 보조원</u>으로 직능을 분류한다.</p> <p>(현행과 같음)</p> <p>&lt;표 4-3&gt; 사업대상지역의 규모에 따른 기술등급별 투입인원</p> <p style="text-align: center;">(단위 : 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th colspan="6"></th></tr> <tr> <td rowspan="6">기 본 설 계</td><td>기술사</td><td></td><td></td><td></td><td></td><td></td></tr> <tr><td>특급</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고급</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중급</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초급</td><td></td><td></td><td></td><td></td><td></td></tr> <tr><td><b>초급숙련</b></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p>(현행과 같음)</p>	구 분	직능별 소요작업량						업무내용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u>초급 숙련</u>	현행과 같음							구분							기 본 설 계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b>초급숙련</b>							현행과 같음							<p>협회</p>
구 분	직능별 소요작업량																																																																																																																																																				
업무내용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u>보조원</u>																																																																																																																																															
생략																																																																																																																																																					
구분																																																																																																																																																					
기 본 설 계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b>보조원</b>																																																																																																																																																				
생략																																																																																																																																																					
구 분	직능별 소요작업량																																																																																																																																																				
업무내용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u>초급 숙련</u>																																																																																																																																															
현행과 같음																																																																																																																																																					
구분																																																																																																																																																					
기 본 설 계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b>초급숙련</b>																																																																																																																																																				
현행과 같음																																																																																																																																																					

구분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5장	3.3. 분배함 및 Patch Panel 등 설치							3.3. 분배함 및 Patch Panel 등 설치							정보통신			
	<표 5-6> 분배함 및 Patch Panel 설치 요율							<표 5-6> 분배함 및 Patch Panel 설치 요율										
	공정 별	규격	단위	통신 케이블공	통신 설비공	통신 내선공	보통 인부	공정 별	규격	단위	통신 케이블공	통신 설비공	통신 내선공	보통 인부				
	생략							현행과 같음										
	110 Block 설치	25P 50P 100P 300P	생략							110 Block 설치	25P 이하 50P 100P 300P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성단 (24Port, 25P 4Line)	개	0.58	-	-	0.42		성단	Patch Panel	Port	0.03	-	-	0.02				
	회 선 시 험	Port (4P)	0.05	-	-	0.03		110 Block	25P 1Line	0.15	-	-	0.11					
	[해설] ①~⑤ 생략 <신설> ⑥~⑦ 생략							[해설]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젤리충진 케이블 성단은 성단 품셈의 150% 적용 ⑦~⑧ 현행과 같음										

구분	현 행					개정(안)					비 고																																									
	<b>5.1. UPS</b> <표 5-17> UPS 설치 관련 작업 적용 요율					<b>5.1. UPS</b> <표 5-17> UPS 설치 관련 작업 적용 요율					정보통신																																									
	<table border="1"> <thead> <tr> <th>공정별</th> <th>단위</th> <th>통신 설비공</th> <th>보통 인부</th> <th><u>&lt;신설&gt;</u></th> </tr> </thead> <tbody> <tr> <td>소형(1~<u>3kVA</u>) 이하</td> <td>대</td> <td>1.00</td> <td>-</td> <td></td></tr> <tr> <td>3kVA초과~10kVA 이하</td> <td>대</td> <td>3.00</td> <td>-</td> <td></td></tr> <tr> <td>10kVA초과~20kVA 이하</td> <td>대</td> <td>4.00</td> <td>1.00</td> <td></td></tr> <tr> <td>20kVA초과~30kVA 이하</td> <td>대</td> <td>5.00</td> <td>2.00</td> <td></td></tr> <tr> <td>30kVA 초과~100kVA 이하</td> <td>대</td> <td>6.00</td> <td>3.00</td> <td></td></tr> <tr> <td>100kVA 초과~250kVA 이하</td> <td>대</td> <td>7.00</td> <td>4.00</td> <td></td></tr> <tr> <td>250kVA초과~500kVA 이하</td> <td>대</td> <td>8.00</td> <td>5.00</td> <td></td></tr> <tr>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u>&lt;신설&gt;</u></td><td></td></tr> </tbody> </table>					공정별	단위	통신 설비공	보통 인부	<u>&lt;신설&gt;</u>	소형(1~ <u>3kVA</u> ) 이하	대	1.00	-		3kVA초과~10kVA 이하	대	3.00	-		10kVA초과~20kVA 이하	대	4.00	1.00		20kVA초과~30kVA 이하	대	5.00	2.00		30kVA 초과~100kVA 이하	대	6.00	3.00		100kVA 초과~250kVA 이하	대	7.00	4.00		250kVA초과~500kVA 이하	대	8.00	5.00		<u>&lt;신설&gt;</u>						
공정별	단위	통신 설비공	보통 인부	<u>&lt;신설&gt;</u>																																																
소형(1~ <u>3kVA</u> ) 이하	대	1.00	-																																																	
3kVA초과~10kVA 이하	대	3.00	-																																																	
10kVA초과~20kVA 이하	대	4.00	1.00																																																	
20kVA초과~30kVA 이하	대	5.00	2.00																																																	
30kVA 초과~100kVA 이하	대	6.00	3.00																																																	
100kVA 초과~250kVA 이하	대	7.00	4.00																																																	
250kVA초과~500kVA 이하	대	8.00	5.00																																																	
<u>&lt;신설&gt;</u>																																																				
	<p>[해설]</p> <p>①~② 생략</p> <p>③ 원격감시 및 제어 S/W설치 시는 S/W시험사 0.58명을 <u>별도 가산</u></p>					<p>[해설]</p> <p>①~② 생략</p> <p><u>&lt;삭제&gt;</u></p>																																														

구분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6장	<u>&lt;신설&gt;</u>	<b>5.2. 광 송수신기 등</b> <b>&lt;표 6-13&gt; 광 송수신기 신·증설 관련 적용 요율</b>						정보통신						
<b>광 송신기 (구내전송 증폭기)</b>		<b>공정별</b>	<b>단위</b>	<b>광케이블 설치사</b>	<b>통신 설비공</b>	<b>통신관련 산업기사</b>	<b>보통 인부</b>							
<b>광 증폭기</b>		대	0.07	0.07	-	-	-							
<b>광 수신기 (구내전송 증폭기)</b>		대	0.06	0.06	-	-	-							
<b>광 증폭기 설치 시험 및 조정</b>		대	-	0.20	-	0.20	0.20							
<b>광 수신기 증폭기 설치 시험 및 조정</b>		대	-	0.20	0.20	0.20	-							
<b>[해설]</b> ① 광 송신기 및 광 증폭기는 Rack에 설치하며 기본 동작시험 품셈은 포함														

구분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8장	5.1. 가공 자가망 5.1.1. 광케이블 설치공사  <표 8-6> 광자가망(가공) 관련 작업 적용 요율								5.1. 가공 자가망 5.1.1. 광케이블 설치공사  <표 8-6> 광자가망(가공) 관련 작업 적용 요율								정보통신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th>규격</th><th>단위</th><th>광케이블 설치사</th><th>통신관련 기사</th><th>통신 설비공</th><th>특별 인부</th><th>보통 인부</th></tr> </thead> <tbody> <tr> <td colspan="8">생략</td></tr> <tr> <td>외피접속</td><td>개소</td><td>0.67</td><td>-</td><td>-</td><td>0.31</td><td>-</td><td></td></tr> <tr> <td colspan="8">생략</td></tr> <tr> <td>분배반</td><td>FDF</td><td>대</td><td>-</td><td>-</td><td>0.23</td><td>-</td><td>0.23</td></tr> <tr> <td colspan="8" style="text-align: center;"><b>&lt;신설&gt;</b></td></tr> <tr> <td>국내</td><td>성단</td><td colspan="6">생략</td><td></td><td colspan="8">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th>규격</th><th>단위</th><th>광케이블 설치사</th><th>통신관련 기사</th><th>통신 설비공</th><th>특별 인부</th><th>보통 인부</th></tr> </thead> </table> </td><td></td></tr> </tbody> </table>																	항목	규격	단위	광케이블 설치사	통신관련 기사	통신 설비공	특별 인부	보통 인부	생략								외피접속	개소	0.67	-	-	0.31	-		생략								분배반	FDF	대	-	-	0.23	-	0.23	<b>&lt;신설&gt;</b>								국내	성단	생략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th>규격</th><th>단위</th><th>광케이블 설치사</th><th>통신관련 기사</th><th>통신 설비공</th><th>특별 인부</th><th>보통 인부</th></tr> </thead> </table>								항목	규격	단위	광케이블 설치사	통신관련 기사	통신 설비공	특별 인부	보통 인부				
항목	규격	단위	광케이블 설치사	통신관련 기사	통신 설비공	특별 인부	보통 인부																																																																																							
생략																																																																																														
외피접속	개소	0.67	-	-	0.31	-																																																																																								
생략																																																																																														
분배반	FDF	대	-	-	0.23	-	0.23																																																																																							
<b>&lt;신설&gt;</b>																																																																																														
국내	성단	생략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th>규격</th><th>단위</th><th>광케이블 설치사</th><th>통신관련 기사</th><th>통신 설비공</th><th>특별 인부</th><th>보통 인부</th></tr> </thead> </table>								항목	규격	단위	광케이블 설치사	통신관련 기사	통신 설비공	특별 인부	보통 인부																																																																						
항목	규격	단위	광케이블 설치사	통신관련 기사	통신 설비공	특별 인부	보통 인부																																																																																							
	<p>[해설]</p> <p><u>&lt;신설&gt;</u></p> <p>①~⑧ 생략</p> <p>⑨ 절체접속품셈에는 <u>&lt;신설&gt;</u> 코아대조품셈이 포함되었음. 다만, 절체 접속 시 시험(접속 전·후, 최종)을 하는 경우 에는 해당 시험품셈 별도 계상(구간별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시험품셈 별도 계상)</p> <p>⑩ 외피접속품셈은 단말처리품셈이 포함되었으며, 분기케이블 인입없이 외피해체 후 재접속은 외피접속품셈의 70%적 용하고 1분기 추가마다 외피접속품셈의 30%씩을 외피 해체 후 재접속품셈에 가산</p> <p>⑪~⑯ 생략</p> <p><u>&lt;신설&gt;</u></p>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th>규격</th><th>단위</th><th>광케이블 설치사</th><th>통신관련 기사</th><th>통신 설비공</th><th>특별 인부</th><th>보통 인부</th></tr> </thead> </table>								항목	규격	단위	광케이블 설치사	통신관련 기사	통신 설비공	특별 인부	보통 인부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8">현행과 같음</th> </tr> </thead> </table>		현행과 같음								<table border="1"> <thead> <tr> <th>광접속합체</th><th>개소</th><th>0.67</th><th>-</th><th>-</th><th>0.31</th><th>-</th><th></th></tr> </thead> </table>		광접속합체	개소	0.67	-	-	0.31	-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8">현행과 같음</th> </tr> </thead> </table>		현행과 같음								<table border="1"> <thead> <tr> <th>분배반</th><th>FDF</th><th>대</th><th>-</th><th>-</th><th>0.23</th><th>-</th><th>0.23</th></tr> </thead> </table>		분배반	FDF	대	-	-	0.23	-	0.23	<table border="1"> <thead> <tr> <th>광 분배기</th><th>4분배기 이하</th><th>개</th><th>0.06</th><th>-</th><th>-</th><th>-</th><th>-</th></tr> </thead> </table>		광 분배기	4분배기 이하	개	0.06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8">현행과 같음</th> </tr> </thead> </table>		현행과 같음								<table border="1"> <thead> <tr> <th>국내</th><th>성단</th><th colspan="6" rowspan="2">현행과 같음</th></tr> </thead> </table>		국내	성단	현행과 같음					
항목	규격	단위	광케이블 설치사	통신관련 기사	통신 설비공	특별 인부	보통 인부																																																																																							
현행과 같음																																																																																														
광접속합체	개소	0.67	-	-	0.31	-																																																																																								
현행과 같음																																																																																														
분배반	FDF	대	-	-	0.23	-	0.23																																																																																							
광 분배기	4분배기 이하	개	0.06	-	-	-	-																																																																																							
현행과 같음																																																																																														
국내	성단	현행과 같음																																																																																												
	<p>[해설]</p> <p>① 720Core 광섬유케이블 포설은 본 품셈의 110% 적용</p> <p>②~⑨ 현행과 같음</p> <p>⑩ 절체접속품셈에는 <u>작업개소별</u> 코아대조품셈이 포함되었음. 다만, 절체 접속 시 시험(접속 전·후, 최종)을 하는 경우 에는 해당 시험품셈 별도 계상(구간별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시험품셈 별도 계상)</p> <p>⑪ <u>광접속합체</u> 공정은 <u>외피접속</u> 및 <u>광접속합체 설치</u>, <u>광섬 유케이블</u> 단말처리품셈이 포함되었으며, 분기케이블 인 입없이 <u>광접속합체</u> 해체 후 <u>조립은 광접속합체</u> 품셈의 70%적용하고 1분기 추가마다 <u>광접속합체</u> 품셈의 30% 를 가산</p> <p>⑫~⑯ 현행과 같음</p> <p>⑰ <u>광분배기</u>(Optical Splitter 또는 Remote Node)는 4분배기 이하 설치 품셈이며, 8분배기는 본 품셈의 160%, 8분배 기를 초과하는 경우 4분배 추가당 60% 가산</p>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th>규격</th><th>단위</th><th>광케이블 설치사</th><th>통신관련 기사</th><th>통신 설비공</th><th>특별 인부</th><th>보통 인부</th></tr> </thead> </table>								항목	규격	단위	광케이블 설치사	통신관련 기사	통신 설비공	특별 인부	보통 인부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8">현행과 같음</th> </tr> </thead> </table>		현행과 같음								<table border="1"> <thead> <tr> <th>광접속합체</th><th>개소</th><th>0.67</th><th>-</th><th>-</th><th>0.31</th><th>-</th><th></th></tr> </thead> </table>		광접속합체	개소	0.67	-	-	0.31	-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8">현행과 같음</th> </tr> </thead> </table>		현행과 같음								<table border="1"> <thead> <tr> <th>분배반</th><th>FDF</th><th>대</th><th>-</th><th>-</th><th>0.23</th><th>-</th><th>0.23</th></tr> </thead> </table>		분배반	FDF	대	-	-	0.23	-	0.23	<table border="1"> <thead> <tr> <th>광 분배기</th><th>4분배기 이하</th><th>개</th><th>0.06</th><th>-</th><th>-</th><th>-</th><th>-</th></tr> </thead> </table>		광 분배기	4분배기 이하	개	0.06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국내</th><th>성단</th><th colspan="6">현행과 같음</th></tr> </thead> </table>		국내	성단	현행과 같음															
항목	규격	단위	광케이블 설치사	통신관련 기사	통신 설비공	특별 인부	보통 인부																																																																																							
현행과 같음																																																																																														
광접속합체	개소	0.67	-	-	0.31	-																																																																																								
현행과 같음																																																																																														
분배반	FDF	대	-	-	0.23	-	0.23																																																																																							
광 분배기	4분배기 이하	개	0.06	-	-	-	-																																																																																							
국내	성단	현행과 같음																																																																																												

구분	현 행									개정(안)									비 고															
	5.2. 지중 자가망									5.2. 지중 자가망																								
	5.2.1. 광케이블 설치공사									5.2.1. 광케이블 설치공사																								
	<표 8-8> 광자가망(지중) 관련 작업 적용 요율									<표 8-8> 광자가망(지중) 관련 작업 적용 요율																								
	항목	규격	단위	광케이블 설치사	통신관련기사	통신설비공	통신외선공	특별인부	보통인부	항목	규격	단위	광케이블 설치사	통신관련기사	통신설비공	통신외선공	특별인부	보통인부																
광케이블	생략									현행과 같음																								
	견인선 포설 (인력포설 <u>4km</u> )	100m	-	-	-	0.28	-	0.42		견인선 포설 (인력포설 <u>4mm</u> )	100m	-	-	-	0.28	-	0.42																	
	수공설치	기	-	-	-	0.04	0.09	0.67		수공설치	기	-	-	-	0.04	0.09	0.67																	
생략									현행과 같음																									
외피접속		개소	0.67	-	-	-	0.31	-	현행과 같음																									
생략									광접속합체																									
분배반	FDF	대	-	-	0.23	-	-	0.23		개소	0.67	-	-	-	-	0.31	-																	
<신설>									현행과 같음																									
국내성단	생략								분배반																									
<해설>									광																									
<신설>									분배기	4분배기 이하	개	0.06	-	-	-	-	-																	
①~⑩ 생략									국내성단	생략																								
⑪ 외피접속품셈은 단말처리품셈이 포함되었으며, 분기케이블 인입없이 외피해체 후 재접속은 외피접속품셈의 70% 적용하고 1분기 추가마다 외피접속품셈의 30%씩을 외피해체 후 재접속품셈에 가산									① 720Core 광섬유케이블 포설은 본 품셈의 110% 적용																									
⑫~⑯ 현행과 같음									⑫ 광접속합체 공정은 외피접속 및 광접속합체 설치, 광섬유케이블 단말처리품셈이 포함되었으며, 분기케이블 인입없이 광접속합체 해체 후 조립은 광접속합체 품셈의 70% 적용하고 1분기 추가마다 광접속합체 품셈의 30%를 가산																									
⑰~⑲ 생략									⑯~⑳ 현행과 같음																									

구분	현 행					개정(안)					비 고
	<u>&lt;신설&gt;</u>					<u>㉙ 광분배기(Optical Splitter 또는 Remote Node)는 4분배기</u> <u>이하 설치 품셈이며, 8분배기는 본 품셈의 160%, 8분배</u> <u>기를 초과하는 경우 4분배 추가당 60% 가산</u>					
제9장	<b>2.1. 공통 가설공사</b> <b>&lt;표 9-1&gt; 공통 가설공사 관련 작업 적용 요율</b>					<b>2.1. 공통 가설공사</b> <b>&lt;표 9-1&gt; 공통 가설공사 관련 작업 적용 요율</b>					건설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작업단위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작업단위	
	먹매김 (사무소)	거푸집	건축목공수	인	0.012	먹매김 (사무소)	거푸집	건축목공수	인	0.012	
		구조부	건축목공수	인	0.005	구조부	건축목공수	인	0.005		
	강관 비계	강관	48.6mm×2.4mm	m	3.99	강관 비계	강관	48.6mm×2.4mm	m	3.99	
		이음철물	-	개	0.50		이음철물	-	개	0.50	
		조임철물	직교, 자재	개	2.08		조임철물	직교, 자재	개	2.08	
		받침철물	-	개	0.04		받침철물	-	개	0.04	
		철물	앵커용	개	0.04		철물	앵커용	개	0.04	
		비계공	조립·해체	인	0.08		비계공	조립·해체	인	0.08	
		<b>인건비</b>	<b>비계공</b>	<b>인</b>	<b>0.08</b>	<b>&lt;삭제&gt;</b>					
		공구손료	인력품의 5%	식	1.00	공구손료	인력품의 5%	식	1.00		
	건축물 보양	하드롱지	-	m <sup>2</sup>	1.20	건축물 보양	하드롱지	-	m <sup>2</sup>	1.20	
		풀	-	kg	0.06		풀	-	kg	0.06	
		인건비	-	인	0.03		인건비	<b>보통인부</b>	인	<b>0.01</b>	
	[해설] 생략					[해설] 현행과 같음					

구분	현 행					개정(안)					비 고																															
	<b>2.2. 벽체공사</b>					<b>2.2. 벽체공사</b>					건설																															
	<표 9-2> 벽체공사 관련 작업 적용 요율					<표 9-2> 벽체공사 관련 작업 적용 요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규격</th><th>단위</th><th>수량</th><th>작업단위</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벽체틀</td><td>건축목공</td><td>인</td><td>0.033</td><td rowspan="2">m<sup>2</sup></td></tr> <tr> <td>보통인부</td><td>인</td><td>0.003</td><td></td></tr> </tbody> </table>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작업단위	벽체틀	건축목공	인	0.033	m <sup>2</sup>	보통인부	인	0.003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규격</th><th>단위</th><th>수량</th><th>작업단위</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벽체틀</td><td>건축목공</td><td>인</td><td>0.033</td><td rowspan="2">m<sup>2</sup></td></tr> <tr> <td>보통인부</td><td>인</td><td>0.003</td><td></td></tr> </tbody> </table>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작업단위	벽체틀	건축목공	인	0.033	m <sup>2</sup>	보통인부	인	0.003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작업단위																																						
벽체틀	건축목공	인	0.033	m <sup>2</sup>																																						
	보통인부	인	0.003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작업단위																																						
벽체틀	건축목공	인	0.033	m <sup>2</sup>																																						
	보통인부	인	0.003																																							
	<b>&lt;신설&gt;</b>					<b>&lt;신설&gt;</b>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접착제 붙임</th><th>접착제</th><th>-</th><th>kg</th><th>2.43</th><th rowspan="2">m<sup>2</sup></th></tr> <tr> <td rowspan="2">인건비</td><td>내장공</td><td>인</td><td>0.030</td><td></td></tr> </thead> <tbody> <tr> <td></td><td>보통인부</td><td>인</td><td>0.013</td><td></td></tr> </tbody> </table>					접착제 붙임	접착제	-	kg	2.43	m <sup>2</sup>	인건비	내장공	인	0.030			보통인부	인	0.013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접착제 붙임</th><th>접착제</th><th>-</th><th>kg</th><th>2.43</th><th rowspan="2">m<sup>2</sup></th></tr> <tr> <td rowspan="2">인건비</td><td>내장공</td><td>인</td><td>0.030</td><td></td></tr> </thead> <tbody> <tr> <td></td><td>보통인부</td><td>인</td><td>0.013</td><td></td></tr> </tbody> </table>					접착제 붙임	접착제	-	kg	2.43	m <sup>2</sup>	인건비	내장공	인	0.030			보통인부	인	0.013	
접착제 붙임	접착제	-	kg	2.43	m <sup>2</sup>																																					
	인건비	내장공	인	0.030																																						
		보통인부	인	0.013																																						
접착제 붙임	접착제	-	kg	2.43	m <sup>2</sup>																																					
	인건비	내장공	인	0.030																																						
		보통인부	인	0.013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수장합판 벽체(수장) 합판붙임</th><th>접착제</th><th>-</th><th>kg</th><th>0.27</th><th rowspan="2">m<sup>2</sup></th></tr> <tr> <td rowspan="2">인건비</td><td>건축목공</td><td>인</td><td>0.065</td><td></td></tr> </thead> <tbody> <tr> <td></td><td>보통인부</td><td>인</td><td>0.007</td><td></td></tr> </tbody> </table>					수장합판 벽체(수장) 합판붙임	접착제	-	kg	0.27	m <sup>2</sup>	인건비	건축목공	인	0.065			보통인부	인	0.007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수장합판</th><th>접착제</th><th>-</th><th>kg</th><th>0.27</th><th rowspan="2">m<sup>2</sup></th></tr> <tr> <td rowspan="2">인건비</td><td>건축목공</td><td>인</td><td>0.065</td><td></td></tr> </thead> <tbody> <tr> <td></td><td>보통인부</td><td>인</td><td>0.007</td><td></td></tr> </tbody> </table>					수장합판	접착제	-	kg	0.27	m <sup>2</sup>	인건비	건축목공	인	0.065			보통인부	인	0.007	
수장합판 벽체(수장) 합판붙임	접착제	-	kg	0.27	m <sup>2</sup>																																					
	인건비	건축목공	인	0.065																																						
		보통인부	인	0.007																																						
수장합판	접착제	-	kg	0.27	m <sup>2</sup>																																					
	인건비	건축목공	인	0.065																																						
		보통인부	인	0.007																																						
	<p><b>[해 설]</b></p> <p>① “벽체틀 품”은 벽체 바탕면에 합판 또는 석고보드 등을 붙이기 위해 목조 벽체틀을 설치하는 기준임(<b>&lt;신설&gt;</b> 틀 절단 및 설치 작업 포함)</p> <p>② 벽체틀 <b>&lt;신설&gt;</b> 간격은 450~600mm를 기준</p> <p><b>&lt;신설&gt;</b></p> <p><b>&lt;신설&gt;</b></p> <p><b>&lt;신설&gt;</b></p> <p>③~④ 생략</p> <p>⑤ “<b>수장합판붙임 품</b>”은 바탕합판 위에 수장합판을 설치하는 기준임(합판 절단 및 설치 작업 포함)</p>					<p><b>[해 설]</b></p> <p>① “벽체틀 품”은 벽체 바탕면에 합판 또는 석고보드 등을 붙이기 위해 목조 벽체틀을 설치하는 기준임(<b>벽체틀 및 칸막이벽틀 품</b>은 틀 절단 및 설치 작업 포함)</p> <p>② 벽체틀 및 <b>내부칸막이벽틀</b> 간격은 450~600mm를 기준</p> <p>③ “<b>칸막이벽틀 품</b>”의 잡재료 및 소모재료(못 등)은 주재료의 5%를 계상</p> <p>④ “<b>벽체합판 품</b>”은 벽체틀 바탕에 목재합판을 설치하는 기준임(합판 절단 및 설치 작업 포함)</p> <p>⑤ “<b>벽체틀 품</b>”, “<b>칸막이벽틀 품</b>”, “<b>벽체합판 품</b>” 및 “<b>수장합판 품</b>”의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에어콤프레샤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를 계상</p> <p>③~④ 현행과 같음</p> <p>⑤ “<b>수장합판 품</b>”은 바탕합판 위에 수장합판을 설치하는 기준임(합판 절단 및 설치 작업 포함)</p>																																				

구분	현 행						개정(안)						비 고																																											
	<b>2.4. 천정공사</b> <표 9-4> 천정공사 관련 작업 적용 요율						<b>2.4. 천정공사</b> <표 9-4> 천정공사 관련 작업 적용 요율						건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규격</th><th>단위</th><th>수량</th><th>설치기준</th><th>작업 단위</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경량 철골 천정 틀 (M- Bar)</td><td rowspan="2">인건비</td><td>특별인부</td><td>인</td><td>0.221</td><td>경량 철골재 설치공</td><td rowspan="3">m<sup>2</sup></td></tr> <tr> <td>보통인부</td><td>인</td><td>0.015</td><td>-</td></tr> <tr> <td>공구 손료</td><td>인건비의 3%</td><td>식</td><td>1.00</td><td>-</td></tr> </tbody> </table>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설치기준	작업 단위	경량 철골 천정 틀 (M- Bar)	인건비	특별인부	인	0.221	경량 철골재 설치공	m <sup>2</sup>	보통인부	인	0.015	-	공구 손료	인건비의 3%	식	1.00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규격</th><th>단위</th><th>수량</th><th>설치기준</th><th>작업 단위</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경량 철골 천정 틀 (M- Bar)</td><td rowspan="2">인건비</td><td>내장공</td><td>인</td><td>0.043</td><td>경량 철골재 설치공</td><td rowspan="3">m<sup>2</sup></td></tr> <tr> <td>보통인부</td><td>인</td><td>0.004</td><td>-</td></tr> <tr> <td>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td><td>인건비의 6%</td><td>식</td><td>1.00</td><td>-</td></tr> </tbody> </table>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설치기준	작업 단위	경량 철골 천정 틀 (M- Bar)	인건비	내장공	인	0.043	경량 철골재 설치공	m <sup>2</sup>	보통인부	인	0.004	-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인건비의 6%	식	1.00	-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설치기준	작업 단위																																																			
경량 철골 천정 틀 (M- Bar)	인건비	특별인부	인	0.221	경량 철골재 설치공	m <sup>2</sup>																																																		
		보통인부	인	0.015	-																																																			
	공구 손료	인건비의 3%	식	1.00	-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설치기준	작업 단위																																																			
경량 철골 천정 틀 (M- Bar)	인건비	내장공	인	0.043	경량 철골재 설치공	m <sup>2</sup>																																																		
		보통인부	인	0.004	-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인건비의 6%	식	1.00	-																																																			
	생략						현행과 같음																																																	
	[ 해 설 ]						[ 해 설 ]																																																	
	<p>① M-BAR의 기본형 방식에 대한 것이며 변형방식 및 설치기준이외의 설치방식은 별도 계상</p> <p>② 천정슬래브와 천정틀까지의 거리는 1m내외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경량 천정의 반자틀(M-BAR) 설치까지 마감(합판텍스류) 설치품(설치공 0.15인/m<sup>2</sup>당)은 포함된 것이고 재료는 별도 계상</p> <p>③ 달대볼트나 인서트가 설치되지 않았을 때는 앵커설치를 위한 별도품을 계상할 수 있으며, 인서트설치 품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건축부문 15장 금속공사, 15-7인서트설치”에 따름</p> <p>④ 채널 및 BAR의 제품 규격은 4.0m를 기준으로 한 것임</p> <p>⑤ 천정면적이 협소하거나 기타 작업환경의 난이도에 따라 설치품 증감 가능</p> <p>⑥ 특수구조의 천정 및 특수조건일 때는 별도 계상 가능</p> <p>⑦ 본 품은 재료할증 및 소운반품 포함</p>						<p>① 평면천장에 경량철골틀(M-BAR)의 BAR 간격 300mm 설치작업을 기준으로 함</p> <p>③ 천장마감(텍스류, 석고보드 등) 및 몰딩 설치는 별도 계상</p> <p>② 인서트, 달대 및 행거, 천장틀(채널, BAR 등) 설치작업이 포함</p>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④ 특수구조의 천장(우물천장 등)은 별도 계상																																																	

구분	현 행	개정(안)	비 고																																																																																																													
	<p>⑧ 달대 및 인서트의 규격은 슬래브와 천정틀 높이 및 천정 틀 하중에 따라 사용</p> <p>⑨ ( )내의 부속재료는 필요할 때 계상</p> <p>⑩ 달대볼트, 캐링채널, 마이너채널, M-BAR의 규격은 설계 서 또는 시방에 명기 적용</p> <p>⑪ 각종 기구 부착에 따른 천장틀 보강은 별도 계상</p>	<p>&lt;삭제&gt;</p> <p>&lt;삭제&gt;</p> <p>⑤ 재료량은 설계기준에 따라 계상</p> <p>&lt;삭제&gt;</p>																																																																																																														
	<p>2.7. 케이블랙 및 트레이</p> <p>&lt;표 9-7&gt; 생략</p> <p>[해설]</p> <p>① 생략</p> <p><u>&lt;신설&gt;</u></p> <p>②~⑦ 생략</p>	<p>2.7. 케이블랙 및 트레이</p> <p>&lt;표 9-7&gt; 현행과 같음</p> <p>[해설]</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엘보, 티, 크로스, 레듀샤 등 접속재는 1m 품셈을 적용</p> <p>③~⑧ 현행과 같음</p>	정보통신																																																																																																													
	<p>2.9. 부대공사</p> <p>&lt;표 9-9&gt; 부대공사 관련 작업 적용 요율</p> <table border="1"> <thead> <tr> <th>공정별</th><th>규격</th><th>단위</th><th>통신 내선공</th><th>보통 인부</th><th>착암 공</th><th>방수 공</th></tr> </thead> <tbody> <tr> <td colspan="7"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tr> <tr> <td>엑스팬슨</td><td>Ø9mm×50~70</td><td>10본</td><td>0.72</td><td>-</td><td>-</td><td>-</td></tr> <tr> <td>볼트(팽창)</td><td>Ø12mm×57~76</td><td>10본</td><td>1.30</td><td>-</td><td>-</td><td>-</td></tr> <tr> <td colspan="7"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tr> <tr> <td rowspan="4">벽관통 구멍 파기</td><td>벽두께 25cm 이하</td><td>개소</td><td>-</td><td>-</td><td>0.40</td><td>-</td></tr> <tr> <td>벽두께 30cm 이하</td><td>개소</td><td>-</td><td>-</td><td>0.60</td><td>-</td></tr> <tr> <td>벽두께 40cm 이하</td><td>개소</td><td>-</td><td>-</td><td>1.00</td><td>-</td></tr> <tr> <td>벽두께 50cm 이하</td><td>개소</td><td>-</td><td>-</td><td>1.90</td><td>-</td></tr> <tr> <td colspan="7"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tr> </tbody> </table>	공정별	규격	단위	통신 내선공	보통 인부	착암 공	방수 공	생략							엑스팬슨	Ø9mm×50~70	10본	0.72	-	-	-	볼트(팽창)	Ø12mm×57~76	10본	1.30	-	-	-	생략							벽관통 구멍 파기	벽두께 25cm 이하	개소	-	-	0.40	-	벽두께 30cm 이하	개소	-	-	0.60	-	벽두께 40cm 이하	개소	-	-	1.00	-	벽두께 50cm 이하	개소	-	-	1.90	-	생략							<p>2.9. 부대공사</p> <p>&lt;표 9-9&gt; 부대공사 관련 작업 적용 요율</p> <table border="1"> <thead> <tr> <th>공정별</th><th>규격</th><th>단위</th><th>통신 내선공</th><th>보통 인부</th><th>착암 공</th><th>방수 공</th></tr> </thead> <tbody> <tr> <td colspan="7"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tr> <tr> <td colspan="7" style="text-align: center;">&lt;삭제&gt;</td></tr> <tr> <td colspan="7"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tr> <tr> <td colspan="7" style="text-align: center;">&lt;삭제&gt;</td></tr> <tr> <td colspan="7"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tr> </tbody> </table>	공정별	규격	단위	통신 내선공	보통 인부	착암 공	방수 공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과 같음							정보통신
공정별	규격	단위	통신 내선공	보통 인부	착암 공	방수 공																																																																																																										
생략																																																																																																																
엑스팬슨	Ø9mm×50~70	10본	0.72	-	-	-																																																																																																										
볼트(팽창)	Ø12mm×57~76	10본	1.30	-	-	-																																																																																																										
생략																																																																																																																
벽관통 구멍 파기	벽두께 25cm 이하	개소	-	-	0.40	-																																																																																																										
	벽두께 30cm 이하	개소	-	-	0.60	-																																																																																																										
	벽두께 40cm 이하	개소	-	-	1.00	-																																																																																																										
	벽두께 50cm 이하	개소	-	-	1.90	-																																																																																																										
생략																																																																																																																
공정별	규격	단위	통신 내선공	보통 인부	착암 공	방수 공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과 같음																																																																																																																

구분	현 행	개정(안)	비 고
	<p>[해 설]</p> <p>①~④ 생략</p> <p>⑤ <u>벽 관통 구멍 파기는 직경 10cm 기준으로 직경 5cm 종 가시마다 본 품셈의 20% 씩 가산</u></p> <p>⑥~⑦ 생략</p> <p><u>&lt;신설&gt;</u></p>	<p>[해 설]</p> <p>①~④ 현행과 같음</p> <p>⑤ <u>세트양카, 스트롱양카, 케미칼양카, 엑스팬션볼트 등 설치는 앙카볼트 설치 품셈 적용</u></p> <p>⑥~⑦ 현행과 같음</p> <p>⑧ <u>구멍뚫기 후 복구 등 소규모로 몰탈시멘트를 시공할 경우 kg당 방화품 설치 품을 준용</u></p>	
	<p>2.10. 구내 통신 배관</p> <p>&lt;표 9-10&gt; 생략</p> <p>[해 설]</p> <p>①~④ 생략</p> <p>⑤ 폴리에틸렌 전선관(CD관) 및 합성수지제 흠(가요) 전선관&lt;신설&gt;은 합성수지전선관 품의 80% 적용</p> <p>⑥~⑩ 생략</p>	<p>2.10. 구내 통신 배관</p> <p>&lt;표 9-10&gt; 현행과 같음</p> <p>[해 설]</p> <p>①~④ 현행과 같음</p> <p>⑤ 폴리에틸렌 전선관 &lt;삭제&gt; 및 합성수지제 흠(가요) 전선관&lt;CD관, PE관&gt;은 합성수지전선관 품의 80% 적용</p> <p>⑥~⑩ 현행과 같음</p>	정보통신
	<p>2.13. 통신용 구내 전력케이블 신설</p> <p>&lt;표 9-13&gt; 생략</p> <p>[해 설]</p> <p>①~⑩ 생략</p> <p>⑪ 16㎟ <u>이하 단심</u>케이블은“제9장 2.12 제어용 케이블 신설”품셈 적용</p> <p>⑫ 생략</p> <p>⑬ <u>185㎟ 이상의 경우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6-18 통신용 구내 전력케이블 신설”참고</u></p>	<p>2.13. 통신용 구내 전력케이블 신설</p> <p>&lt;표 9-13&gt; 현행과 같음</p> <p>[해 설]</p> <p>①~⑩ 현행과 같음</p> <p>⑪ 16㎟ <u>미만</u> 케이블은“제9장 2.12 제어용 케이블 신설”품셈 적용</p> <p>⑫ 현행과 같음</p> <p><u>&lt;삭제&gt;</u></p>	정보통신

구분	현 행						개정(안)						비 고	
	<b>6.3. CCTV System</b>						<b>6.3. CCTV System</b>						정보통신	
	<표 9-22> CCTV System 설치 관련 작업 적용 요율						<표 9-22> CCTV System 설치 관련 작업 적용 요율							
구 분	공정별	단위	통신관련 산업기사	통신 설비공	통신 내선공	보통 인부	구 분	공정별	단위	통신관련 산업기사	통신 설비공	통신 내선공	보통 인부	
촬상부 설 치	카메라설치 돔(Dome)형	대	0.20	0.18	-	-	촬상부 설 치	카메라설치 돔(Dome)형	대	0.20	0.18	-	-	
	<u>하우징(Housing)</u> 돔(Dome)형	대	-	<u>0.19</u>	-	<u>0.19</u>		<u>&lt;삭제&gt;</u>						
	브라켓(Bracket) 천정형	대	-	0.38	-	0.38		브라켓(Bracket) 천정형	대	-	0.38	-	0.38	
	팬틸트(Pan/Tilt) 설치	대	-	-	0.55	0.66		팬틸트(Pan/Tilt) 설치	대	-	-	0.55	0.66	
생략						현행과 같음								
전송부 설 치	광 송 · 수신	1CH 4CH 8CH	대 대 대	- - -	0.25 0.29 0.33	- - -	전송부 설 치	<삭제>						
	장치							엔코더	대	-	0.20	-	0.20	
	엔코더							디코더	대	-	0.20	-	0.20	
	디코더							현행과 같음						
	생략							[해설]						
[해설]						[해설]								
<p>① <u>카메라 설치 시 팬틸트(Pan/Tilt)형, 폴(Pole)에 설치 시</u>는 120% 적용, 렌즈교체 설치는 카메라 설치품의 80% 적용</p> <p>② <u>&lt;신설&gt; 스피드 돔 카메라는 돔(Dome)형 카메라 설치 품의 180% 적용</u></p> <p>③ <u>돔(Dome)형 하우징 내부에 일반형 카메라 설치 시는 일반형 카메라 설치품 적용</u></p> <p>④ <u>팬틸트(Pan/Tilt) 및 하우징(Housing) 일체형 카메라는 카메라 설치품만 적용</u></p> <p>⑤ <u>하우징(Housing) 설치 시(Bracket 포함) 수냉식은 300%, 기타 특수형(방폭형, 공냉식형, 내방사선형)은 200% 적용</u></p>						<p>① <u>일반형 카메라 설치는 하우징(Housing) 및 렌즈 설치 포함이며, 하우징(Housing)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본 품 셈의 80%를 적용하고, 팬틸트(Pan/Tilt)형, 폴(Pole)에 설치 시는 120% 적용, 렌즈교체 설치는 카메라 설치품의 80% 적용</u></p> <p>② <u>팬틸트(Pan/Tilt) 일체형 카메라 또는 스피드 돔 카메라는 돔(Dome)형 카메라 설치품의 180% 적용</u></p> <p><u>&lt;삭제&gt;</u></p> <p><u>&lt;삭제&gt;</u></p> <p><u>&lt;삭제&gt;</u></p>								

구분	현 행	개정(안)	비 고
	<p>⑥~⑨ 생략 <u>&lt;신설&gt;</u></p>	<p>③~⑥ 현행과 같음 ⑦ 광 송수신기 설치품은 “제6장 7.2 광 송수신기 등” 적용</p>	
제10장	<p>2.2. 운영관리 업무 범위 2.2.1. 업무범위</p> <p>업무의 범위는 버스정보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업무로 ATMS 또는 타부서의 업무지원(산불감시, 하천감시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업무범위의 명확한 정의를 위해 버스정보 센터 운영·관리 업무는 <u>ITS 업무요령</u>을 기반으로 하여 운영, 유지 관리, 검사·점검, 교정으로 구분한다.</p>	<p>2.2. 운영관리 업무 범위 2.2.1. 업무범위</p> <p>업무의 범위는 버스정보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업무로 ATMS 또는 타부서의 업무지원(산불감시, 하천감시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업무범위의 명확한 정의를 위해 버스정보 센터 운영·관리 업무는 <u>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u>을 기반으로 하여 운영, 유지관리, 검사·점검, 교정으로 구분한다.</p>	협회
	<p>4.1.2. 효과분석</p> <p>첨단교통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도로 이용효율의 변화, 도로 이용자의 교통편의성 증대 등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u>ITS 업무요령</u> 등에서 정의하는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효과분석을 수행한다. 효과 분석에 따른 업무 및 관련 비용은 본 품의 “제13장 효과분석” 부문을 참고한다.</p>	<p>4.1.2. 효과분석</p> <p>첨단교통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도로 이용효율의 변화, 도로 이용자의 교통편의성 증대 등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u>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u> 등에서 정의하는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효과분석을 수행한다. 효과분석에 따른 업무 및 관련 비용은 본 품의 “제13장 효과분석” 부문을 참고한다.</p>	협회
제11장	<p>제11장 표준적용 검증시험 및 성능평가 각주 8) <u>ITS 업무매뉴얼-효과분석 편</u>, ITS 사업시행지침 참조</p>	<p>제11장 표준적용 검증시험 및 성능평가 각주 8) <u>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u> 참조</p>	협회

구분	현 행	개정(안)	비 고																								
	<p><b>1. 정의</b></p> <p>첨버스정보시스템의 수집 및 가공된 데이터는 시스템 구축·운영의 효율성, 정보수집 및 정보교환의 신속성 및 정확성, 센터 간 정보교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u>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56호)</u>」 및 <u>ITS 사업시행지침</u>을 준수해야한다. 본 장에서는 버스정보시스템의 제공 서비스가 표준에 따라 올바르게 구현되었는지를 시험·검증하는데 필요한 종별, 업무내용 별 기준품을 산정하고 표준품 내역에 명시한 품셈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p>	<p><b>1. 정의</b></p> <p>버스정보시스템의 수집 및 가공된 데이터는 시스템 구축·운영의 효율성, 정보수집 및 정보교환의 신속성 및 정확성, 센터 간 정보교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u>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준</u>」 및 <u>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성능평가기준</u>을 준수해야한다. 본 장에서는 버스정보시스템의 제공 서비스가 표준에 따라 올바르게 구현되었는지를 시험·검증하는데 필요한 종별, 업무내용 별 기준품을 산정하고 표준품 내역에 명시한 품셈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p>	협회																								
	<p><b>3. 표준품 산정내역</b></p> <p>&lt;표 11-1&gt; 표준검증 표준품 산정내역</p>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별</th><th>내용</th><th>단위</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 align="center" colspan="4">생략</td></tr> <tr> <td>일반 관리비</td><td>인건비, 경비 합계액의 <b>5%</b> 이하</td><td>식</td><td>-</td></tr> </tbody> </table>	종별	내용	단위	비고	생략				일반 관리비	인건비, 경비 합계액의 <b>5%</b> 이하	식	-	<p><b>3. 표준품 산정내역</b></p> <p>&lt;표 11-1&gt; 표준검증 표준품 산정내역</p>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별</th><th>내용</th><th>단위</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 align="center" colspan="4">현행과 같음</td></tr> <tr> <td>일반 관리비</td><td>인건비, 경비 합계액의 <b>6%</b> 이하</td><td>식</td><td>-</td></tr> </tbody> </table>	종별	내용	단위	비고	현행과 같음				일반 관리비	인건비, 경비 합계액의 <b>6%</b> 이하	식	-	계약예규
종별	내용	단위	비고																								
생략																											
일반 관리비	인건비, 경비 합계액의 <b>5%</b> 이하	식	-																								
종별	내용	단위	비고																								
현행과 같음																											
일반 관리비	인건비, 경비 합계액의 <b>6%</b> 이하	식	-																								

구분	현 행	개정(안)	비 고
	<p><b>6.1. 성능평가</b></p> <p>성능평가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6조에 의거, ITS 사업시행자가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 및 신뢰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장비, 시스템, 서비스의 성능 및 신뢰도를 <u>평가·확인하는 것을</u> 말하며, <u>성능평가 전담 기관에서 고시한 성능 평가 지침을</u> 준용한다.</p>	<p><b>6.1. 성능평가</b></p> <p>성능평가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6조에 의거, ITS 사업시행자가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 및 신뢰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장비, 시스템, 서비스의 성능 및 신뢰도를 <u>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하는 행위를</u> 말하며, <u>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성능평가기준)</u>을 준용한다.</p>	협회
	<p><b>6.2. 성능평가 수행</b></p> <p><u>2014년</u> 현재 성능평가 대상은 차량검지기(VDS), 자동차량인식장치(AVI), &lt;신설&gt;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BIS/BMS 사업시행자가 사업 준공 전 현장에 설치된 정류소안내기(BIT), 차량 내 정보제공장치, 자가무선통신망에 대해 성능 수준판단을 위해 성능평가(이하 준공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p> <p>(생략)</p>	<p><b>6.2. 성능평가 수행</b></p> <p><u>2016년</u> 현재 성능평가 대상은 차량검지기(VDS), 자동차량인식장치(AVI), <u>DSRC 교통정보 시스템을</u>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BIS/BMS 사업시행자가 사업 준공 전 현장에 설치된 정류소안내기(BIT), 차량 내 정보제공장치, 자가무선통신망에 대해 성능 수준판단을 위해 성능평가(이하 준공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p> <p>(현행과 같음)</p>	협회
	<p><b>6.3.3. 일반관리비</b></p> <p>일반관리비는 (인건비+직접경비)의 <u>5%</u> 이내에서 산정한다.</p>	<p><b>6.3.3. 일반관리비</b></p> <p>일반관리비는 (인건비+직접경비)의 <u>6%</u> 이내에서 산정한다.</p>	계약예규

구분	현 행	개정(안)	비 고
	<p><b>6.4. 성능평가의 대행</b></p> <p>ITS 사업시행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u>78조제3항</u>에 의거하여 고시된 전담기관에 <u>준공평가</u> 및 <u>정기평가</u>의 일부 또는 전부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ITS 사업시행자는 <u>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조</u>의 <u>경비 산정기준</u>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산정한 경비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ITS 사업시행자가 전담기관에 평가업무를 <u>대행하고자</u> 하는 경우에는 성능평가 신청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평가결과를 성능평가 성적서를 발행하여야 한다.</p> <p>(생략)</p>	<p><b>6.4. 성능평가의 대행</b></p> <p>ITS 사업시행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u>86조4항</u>에 의거하여 고시된 전담기관에 <u>성능평가</u>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ITS 사업시행자는 <u>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제7조</u>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산정한 경비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ITS 사업시행자가 전담기관에 평가업무를 <u>대행하게 하고자</u> 하는 경우에는 성능평가 신청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평가결과를 성능평가 성적서를 발행하여야 한다.</p> <p>(현행과 같음)</p>	협회
제12장	<p>제12장 사업관리</p> <p>각주 7) <u>ITS 업무매뉴얼</u> – 사업 편 참조</p>	<p>제12장 사업관리</p> <p>각주 7) <u>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u> 참조</p>	협회
	<p><b>3.1.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b></p> <p>(생략)</p> <p>10억원 이하의 사업에 한해서는 실질적인 사업관리비가 산출되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업관리업무를 수행<u>하도록 한다.</u></p> <p>&lt;표 12-2&gt; 생략</p>	<p><b>3.1.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b></p> <p>(현행과 같음)</p> <p>10억원 이하의 사업에 한해서는 실질적인 사업관리비가 산출되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업관리업무를 수행<u>한다.</u></p> <p>&lt;표 12-2&gt; 현행과 같음</p>	협회

구분	현 행	개정(안)	비 고																								
	<p>3. 사업관리비 산정방식</p> <p><u>각주 8) ITS 업무 매뉴얼 사업 편(3.4 사업관리비 산정) 참조</u></p>	<p>3. 사업관리비 산정방식</p> <p><u>&lt;삭제&gt;</u></p>	협회																								
제13장	<p>제13장 효과분석</p> <p><u>각주 9) ITS 업무매뉴얼 – 효과분석 편</u> 참조</p>	<p>제13장 효과분석</p> <p><u>각주 8)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u> 참조</p>	협회																								
	<p>2. 표준품 산정내역</p> <p>&lt;표 13-1&gt; 효과분석 표준품 산정내역</p>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별</th><th>내용</th><th>단위</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 colspan="4">생략</td></tr> <tr> <td>일반 관리비</td><td>인건비, 경비 합계액의 <u>5%</u> 이하</td><td>식</td><td>-</td></tr> </tbody> </table>	종별	내용	단위	비고	생략				일반 관리비	인건비, 경비 합계액의 <u>5%</u> 이하	식	-	<p>2. 표준품 산정내역</p> <p>&lt;표 13-1&gt; 효과분석 표준품 산정내역</p>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별</th><th>내용</th><th>단위</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 colspan="4">현행과 같음</td></tr> <tr> <td>일반 관리비</td><td>인건비, 경비 합계액의 <u>6%</u> 이하</td><td>식</td><td>-</td></tr> </tbody> </table>	종별	내용	단위	비고	현행과 같음				일반 관리비	인건비, 경비 합계액의 <u>6%</u> 이하	식	-	계약예규
종별	내용	단위	비고																								
생략																											
일반 관리비	인건비, 경비 합계액의 <u>5%</u> 이하	식	-																								
종별	내용	단위	비고																								
현행과 같음																											
일반 관리비	인건비, 경비 합계액의 <u>6%</u> 이하	식	-																								
제14장	<p>2.2.3.3. 소형무선기지국(Beacon)</p> <p>&lt;표 14-7&gt; 생략</p> <p>[해설]</p> <p>①~② 생략</p> <p>③ <u>정기점검시</u> 도로교통정리를 위한 보통인부 0.40인을 적용하고, 기계경비(기계손료, 운전경비, 수송료)는 각각 별도 계상</p>	<p>2.2.3.3. 소형무선기지국(Beacon)</p> <p>&lt;표 14-7&gt; 생략</p> <p>[해설]</p> <p>①~② 생략</p> <p>③ <u>점검시</u> 도로교통정리를 위한 보통인부 0.40인을 적용하고, 기계경비(기계손료, 운전경비, 수송료)는 각각 별도 계상</p>	정보통신																								

구분	현 행	개정(안)	비 고																								
	<p>2.3. 센터장비 유지보수</p> <p>2.3.1. 센터장비</p> <p>&lt;표 14-8&gt; 생략</p> <p>[해설]</p> <p>① <u>본 품은 1회 정기점검 기준이며, 단</u>, 부품교체 및 수리는 별도 계상</p> <p>②~⑦ 생략</p>	<p>2.3. 센터장비 유지보수</p> <p>2.3.1. 센터장비</p> <p>&lt;표 14-8&gt; 현행과 같음</p> <p>[해설]</p> <p>① <u>본 품은 1회 점검 기준으로</u>, 부품교체 및 수리는 별도 계상</p> <p>②~⑦ 현행과 같음</p>	정보통신																								
	<p>2.3. 센터장비 유지보수</p> <p>2.3.2. UPS</p> <p>&lt;표 14-9&gt; UPS 유지보수 관련 작업 적용 요율</p> <table border="1"> <thead> <tr> <th>공정별</th> <th>단위</th> <th>통신관련산업기사</th> <th>특별인부</th> </tr> </thead> <tbody> <tr> <td>소형(1~<u>2kVA</u>) 이하</td> <td>대</td> <td>0.45</td> <td>-</td> </tr> <tr> <td colspan="4">생략</td> </tr> </tbody> </table> <p>[해설]</p> <p>① <u>정기점검은</u> 입력부의 전압(<math>\pm 10\%</math>)-전류와 출력부의 전압-전류 안정도(<math>\pm 2\%</math>), 출력주파수(60Mhz) 허용범위 내 측정 및 정전을 대비하여 복전 시험(입·출력부 측정사항 전반)과 뒷데리의 충방전 상태·개별 Cell 전합 점검을 말함</p> <p>② <u>본 품은 1회 정기점검 기준이며</u>, 부품교체 및 수리는 별도 계상</p> <p>③ 생략</p>	공정별	단위	통신관련산업기사	특별인부	소형(1~ <u>2kVA</u> ) 이하	대	0.45	-	생략				<p>2.3. 센터장비 유지보수</p> <p>2.3.2. UPS</p> <p>&lt;표 14-9&gt; UPS 유지보수 관련 작업 적용 요율</p> <table border="1"> <thead> <tr> <th>공정별</th> <th>단위</th> <th>통신관련산업기사</th> <th>특별인부</th> </tr> </thead> <tbody> <tr> <td>소형(1~<u>3kVA</u>) 이하</td> <td>대</td> <td>0.45</td> <td>-</td> </tr> <tr> <td colspan="4">현행과 같음</td> </tr> </tbody> </table> <p>[해설]</p> <p>① <u>점검은</u> 입력부의 전압(<math>\pm 10\%</math>)-전류와 출력부의 전압-전류 안정도(<math>\pm 2\%</math>), 출력주파수(60Mhz) 허용범위 내 측정 및 정전을 대비하여 복전 시험(입·출력부 측정사항 전반)과 뒷데리의 충방전 상태·개별 Cell 전합 점검을 말함</p> <p>② <u>본 품은 1회 점검 기준으로</u>, 부품교체 및 수리는 별도 계상</p> <p>③ 현행과 같음</p>	공정별	단위	통신관련산업기사	특별인부	소형(1~ <u>3kVA</u> ) 이하	대	0.45	-	현행과 같음				정보통신
공정별	단위	통신관련산업기사	특별인부																								
소형(1~ <u>2kVA</u> ) 이하	대	0.45	-																								
생략																											
공정별	단위	통신관련산업기사	특별인부																								
소형(1~ <u>3kVA</u> ) 이하	대	0.45	-																								
현행과 같음																											

구분	현 행	개정(안)	비 고
부록	<p><b>부 록 III. BIS/BMS 시설물 내구연한</b></p> <p><b>III.1 BIS/BMS 시설물 별 내구연한</b></p> <p>ATMS 시설물에 대한 내구연한 기준은 조달청고시 제2011-18호, 국도 ITS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관한 연구용역(2004.1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ITS 사업시행지침(도로전광표지판(VMS)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교통정보 수집용 폐쇄회로 TV(CCTV) 설치 및 관리, 2010.10, 국토해양부)에서 <u>각각</u> 정의하고 있음 (생략) &lt;표 III-1&gt; 생략</p>	<p><b>부 록 III. BIS/BMS 시설물 내구연한</b></p> <p><b>III.1 BIS/BMS 시설물 별 내구연한</b></p> <p>ATMS 시설물에 대한 내구연한 기준은 조달청고시 제2011-18호, 국도 ITS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관한 연구용역(2004.1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u>&lt;삭제&gt;</u>에서 <u>&lt;삭제&gt;</u> 정의하고 있음</p> <p>(현행과 같음) &lt;표 III-1&gt; 현행과 같음</p>	협회
	<u>&lt;신설&gt;</u>	<u>부 록 IV. BIS/BMS 현장시설물 표준단가(원가)</u>	협회
	<u>부 록 IV. BIS/BMS 표준품셈 제개정 절차</u>	<u>부 록 V. BIS/BMS 표준품셈 제개정 절차</u>	협회